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 1424 호

다. 발의일자 : 2020. 4. 3.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안이유

○ 독거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며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골자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나.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함(안 제57조제1항~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안전취약계층’ 용어의 정의를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제57조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표기를 통일시키려는 것으로,

[표]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안전취약계층 ----------
② 시장은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

○ 현행 조례 제2조제12호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본 개정안은 이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 상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현행 조례의 ‘안전취약계층’ 정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나 현행 조례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서술하면서 “저소득층”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처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여겨짐.

○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대응 등을 위한 시책 마련·시행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